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8월 2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8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년 9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업무과장 박 명 호)

□ 제안이유

- 국제유가 급등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매년 상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서민가계 부담 및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6퍼센트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전 수도사용자 등의 체납 수도요금을 새로운 수도사용자 등에게 부과하도록 한 수도요금의 승계 규정을 삭제함.(안 제22조제2항 삭제)
- 당월 사용량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이전 4월의 평균치로 하고,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평균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단서신설)
- 행정기구 개편으로 국·과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규정을 삭제함.(안 제46조 삭제)
-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따라 업종별 평균 6.39퍼센트 요금을 인상하고, 업종간 누진 단계를 산업용 및 일반용은 5단계에서 3단계로, 대중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조정함.(안 별표 2)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요금 인상의 주요인은 무엇인지 ? ○ 상수도 요금의 인상으로 27억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경제의 어려움으로 시기를 조정할수 없는지 ? ○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학교에도 적용할수 없는지 ? ○ 원수 구입비 인상과 소비자 물가지수의 인상에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인상폭을 배제하면 인상율이 낮아질것으로 판단하는데 ? ○ 여월정수장 부지를 매각한다면 수입 측면의 도움으로 시민부담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 상수도특별회계결산감사 결과 상수도 요금이 원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써 인상요인 12%이상이나 전년도에는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인상을 억제하였으나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업종별 평균 6.39% 인상하려는 것임. ○ 지난해에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금년에도 두자리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2006년도 12% 이상을 한번에 인상한다면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므로 충격완화를 위하여 금년에 한자리의 인상이 적절할것임. ○ 업종별 구분에서 업무용에서 일반용으로 변경되는 것이 종교, 신문사, 정당, 학교등이 있으나 학교에만 감면을 적용한다면 원수를 구입하여 정수한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6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것이며, 다른업종에도 불공정과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예상되고 있음. ○ 소비자 물가지수는 항상 인상율을 나타내고 있어 적용함이 타당함. ○ 여월정수장은 고정자산이며 현금자산으로 하여도 상수도특별회계에는 변동이 없을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428호
의결 년월일	2005. 9. 9 (제121회)

제안년월일 : 2005. 9. 8

제안자 : 이옥수의원등 명

1. 수정이유

- 우리시 초, 중, 고등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학교의 규모나 학생수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되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실적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학교 운영의 재정난을 호소하는 실정으로써,
- 동 조례와 같이 상수도 사용의 업종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상수도 요금을 누적 부과하였을 시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고 학업에 충실할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 적용시 감면해 줄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하여 업종별 사용량 요금 부과시 사용량과 상관없이 m³당 690원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26조 관련 업종별 요율표의 별표2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학교(초, 중, 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량 구분 단계를 1단계만 적용한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6조 관련 업종별 요금표의 별표2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학교(초, 중, 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량 구분 단계를 1단계만 적용한다.

-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음.」

“별지”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제26조관련)

(단위 : m³/원)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업종별 사용량 요금			비 고
계량기 구경별	요 금	업종별	사 용 구 분	요 금	
13m/m	620	가정용	20 이하	340	
20m/m	1,300		20 초과 30 이하	540	
25m/m	2,010		30 초과	740	
32m/m	3,590	산업용	100 이하	560	
40m/m	4,900		100 초과 500 이하	780	
50m/m	8,590		500 초과	950	
75m/m	16,270				
100m/m	27,120	일반용	100 이하	690	<u>단, 학교(초,중, 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량 구분 단계를 1단계만 적용</u>
150m/m	60,220		100 초과 500 이하	990	
200m/m	97,000		500 초과	1,240	
250m/m	143,870				
300m/m	200,830	대중탕용	1,000 이하	530	
350m/m	251,580		1,000 초과 2,000 이하	660	
400m/m	282,910		2,000 초과	850	

[수정안 포함]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수도급수조례”를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이전 4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를 “이전 4월의 평균치를”로 하며, 동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전 4월 평균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의 평균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1조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수도법시행령”을 “「수도법 시행령」”으로, “수도법시행규칙”을 “「수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중 “부천시급수공사업무처리 규정”을 각각 “「부천시 급수공사 업무처리 규정」”으로 하며, 제36조제1호 단서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하고, 제43조의2중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 2]

업종별요율표(제26조관련)

(단위 : m³/원)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		업종별사용량요금			비고
계량기 구경별	요금	업종별	사 용 구 분	요금	
13m/m	620	가정용	20 이하	340	
20m/m	1,300		20 초과 30 이하	540	
25m/m	2,010		30 초과	740	
32m/m	3,590	산업용	100 이하	560	
40m/m	4,900		100 초과 500 이하	780	
50m/m	8,590		500 초과	950	
75m/m	16,270				
100m/m	27,120	일반용	100 이하	690	단, 학교(초·중·고 등학교)에 한하 여 사용량 구분 단계를 1단계만 적용
150m/m	60,220		100 초과 500 이하	990	
200m/m	97,000		500 초과	1,240	
250m/m	143,870				
300m/m	200,830	대중탕용	1,000 이하	530	
350m/m	251,580		1,000 초과 2,000 이하	660	
400m/m	282,910		2,000 초과	85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부천시수도급수조례</u></p> <p>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u>다음 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u>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 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u></p> <p>②~④ (생략)</p>	<p><u>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u></p> <p>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u>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u>-----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 ----- ----- -----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의 규 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 -----.</p> <p>②~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8조(신고) ①수도 사용자, 손괴자, 원인자 등은 <u>다음 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8. (생략)</p> <p>② (생략)</p>	<p>제18조(신고)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생략)</p> <p><u>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권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u></p>	<p>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② (생략)</p> <p>③시장은 <u>다음 각호의 1</u>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p> <p>1.~7. (생략)</p>	<p>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7. (현행과 같음)</p>
<p>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u>다음 각호의 1</u>에 해</p>	<p>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p>

현행	개정안
<p>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p> <p>1.~3. (생략)</p> <p>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u>이전 4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단서 신설></u></p> <p>③ (생략)</p> <p>제40조(정수처분) ①시장은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u></p> <p>1.~13. (생략)</p> <p>② (생략)</p> <p>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중 <u>다음 각호는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p> <p>1. 제6조의 급수공사의 승인</p>	<p>----- -----.</p> <p>1.~3. (현행과 같음)</p> <p>②----- ----- <u>이전 4월의 평균치를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전 4월 평균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의 평균치는 규칙으로 정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0조(정수처분) ①-----<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1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6조의2 공용 급수장치의 허가 3. 제7조의2 공사의 대행 4. 제7조의2 준공검사등 5. 제8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 또는 지정 6. 제13조 특수가압시설 설치운영 7. 제14조 흡수정이하의 장치시설 8. 제15조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징수 및 공사의 직권시행 9.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0. 제18조 신고 11. 제19조 급수의 판매금지 12. 제23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3. 제24조 급수정지 및 폐전 14. 제25조 요금의 징수 15. 제28조 요금의 조정 16.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17. 제3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제33조 가산금 징수 19. 제34조 요금납부고지 20. 제35조 일시급수 사용요금징수 21. 제36조 제수수료 징수 22. 제37조 요금등의 감면 	

현행	개정안
<p><u>23.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조치</u></p> <p><u>24. 제39조 급수표지 교부</u></p> <p><u>25. 제40조 정수처분</u></p> <p><u>26. 제41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조치</u></p> <p><u>27. 제42조 과태료</u></p> <p><u>28. 제43조 급수장치의 철거</u></p> <p><u>29. 제44조 이의신청결정</u></p>	

현행					개정안				
[별표 2] 업종별요율표 (제26조관련) (단위:m³/원)					[별표 2] 업종별요율표 (제26조관련) (단위:m³/원)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		업종별사용량요금			-----	-----			
계량기 구경별	요금	업종별	사 용 구 분	요금	---	---	--	-----	--
13m/m	620	가정용	0~20이하	320	---	---	--	20 이하	340
20m/m	1,300		20초과~30이하	500	---	---		20 초과 30 이하	540
25m/m	2,010		30초과	680	---	---		30 초과	740
32m/m	3,590	산업용	0~50이하	500	---	---	--	100 이하 1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560 780 950
40m/m	4,900		50초과~100이하	600	---	---			
50m/m	8,590		100초과~300이하	700	---	---			
75m/m	16,270		300초과~500이하	800	---	---			
100m/m	27,120	일반용	0~50이하	600	---	---	--	100 이하 1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690 990 1,240
150m/m	60,220		50초과~100이하	750	---	---			
200m/m	97,000		100초과~300이하	900	---	---			
250m/m	143,870		300초과~500이하	1,050	---	---			
			500초과	1,200	---	---			
300m/m	200,830	대중탕용	0~1,000이하	500	---	---	--	1,000 이하 1,0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530 660 850
350m/m	251,580		1,000초과~1,500이하	600	---	---			
			1,500초과~2,000이하	700	---	---			
400m/m	282,910		2,000초과	800	---	---			